

가업상속제도 개선방안

이성원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 Study on Inheritance Tax Relief System for Business Succession

Seong-Weon Lee
Shinyoung Accounting Corporation

요 약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전환점에 있어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업상속 세제지원 혜택시 그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가업승계 요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업 상속에 한해 세제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가업승계, 중소기업, 가업상속제도, 가업상속공제

Abstract In this study, we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the inheritance system of family business in Korea, you are trying to present a remedy for the activati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ax assistance benefits at the tim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effect that offers the advantage of tax support to reflect correctly,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subject property, easy to match the requirements of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family business succession Small Business issue of effectiveness of the system has not emerge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realit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addition, if you provide the inheritance tax deduction for the inheritance of the family business, only to inherit the family business of a substantial tax advantages help to move back, the provisions of the post-management is necessary

Key Words :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e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ax Subsidies, Capital Gains, Inheritance Deductions for firms

Received 22 January 2014, Revised 9 June 2014

Accepted 20 July 2014

Corresponding Author: Lee-Seong Weon(Shinyoung Accounting Corporation)

Email: seongwlee@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이나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러한 중소기업 중에는 가업승계가 필요한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의 진전으로 60세 이상의 경영자 노령자수가 1997년에 이미 14%가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근래 들어 가업승계가 단지 한 기업의 개별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의 고용정책이나 부가가치 창출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각종 가업승계 관련 조사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은 현실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업승계에 대한 각종 지원은 단지 우리나라에 국한한 것이 아니어서 주요 각국에서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파격에 가까운 가업승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1].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하여 정책 당국과 일반 국민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각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책 당국의 가업승계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와 달리 일반 국민사이에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분명히 가업승계의 세제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아직도 일부 기업의 경영투명성 결여, 도덕적 해이나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이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굳이 가업승계에 대하여 세제 지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형성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 국민의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업승계에 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가족기업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하여 장수기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

현행 원활한 가업승계의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면 공평성 측면과 현실적인 과세환경의 고려 없이 단지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자는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아이디어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소 혼란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상속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상속 및 증여 세제하에서 가업승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규정을 중심으로 가업승계대상기업 입장과 과세당국 입장에서의 세제지원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지향하여야 할 가업승계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

2.1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개요

우리나라 기업상속제도는 상속공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기업상속 재산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상속 공제한도액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몇 년 동안 경영했는가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지는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경영한 경우 공제한도액이 300억원이 된다.

기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는데, 2억원까지 전액 공제될 수 있다(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업상속 재산은 기업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개인사업체이어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와 법인이어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다르게 설정된다. 먼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체 형태의 기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기업상속 재산이 된다. 한편,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형태의 기업의 경우 주식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경우 기업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먼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세법제IV장의 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그리고 동법인의 자산 중에서 상속증여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들을 평가하고, 사업무관자산의 평가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다. 이 사업무관자산비율을 기업상속 대상법인의 주식평가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법인의 경우 기업상속재산이 된다. 사업무관자산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

는 부동산, 골동품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금전소비 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과다보유 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이다(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2.2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피상속인의 가업 범위와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피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며, 셋째는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첫째, 피상속인의 가업 범위는 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것으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상증법제18조제2항제1호). 여기서 중소기업은 조세 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상증법시행령제15조제1항).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도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인 경우에는 제외된다(상증법제18조제2항제1호).

둘째, 피상속인의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의 지분을 요건과 경영참여 요건이 있다. 지분율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해당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야 한다(상증법시행령제15조제3항). 이러한 지분을 요건과 함께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상증법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 이러한 요건들은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기업을 소유하고, 동시에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직접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가업이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이어야 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이 요건과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3)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4) 상속인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이 상속인 요건들은 미성년자의 경우이거나, 소유와 경영에서 실질적인 가업상속이 아니면서 공제혜택만 받으려는 경우 등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2.3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이행의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이후 10년(영농가업상속의 경우에는 5년)동안 가업유지의무와 고용관련 의무 등 두 가지 이행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상속세가 추정된다(상증법제18조제5항).

3. 가업승계상속제도의 개선방안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의 승계비용을 낮추어 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하고 지속적 성장 및 고용창출을 담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로 인해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어 해당 사업자산의 처분 또는 고용의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업상속시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상속세개혁법 및 경제성장촉진법을 통해 2009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상속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였고, 이를 통해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가능하게 되었다[3].

일본의 경우 2009년 상속세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대상 범위와 공제율을 확대하였고, 독일과 같이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9년 세법개정을 통해 피상속인 요건에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을 축소하고 공제

한도액을 인상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아직 초기단계이다. 조세의 형평성 상 가업승계를 위한 지나친 조세지원혜택은 국가 재정 약화를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 조세지원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조세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1].

3.1 가업상속재산의 명확화

가업상속 세제지원 혜택시 그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즉, 실제 사업활동 사용자자산만이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순수 자신의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이에 대해서까지 상속세 공제혜택이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4].

가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의 경우 별도의 규모나 업종 제한 규정이 없으나 영국의 경우 전문적이거나 친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가장 엄격하게 규모와 업종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를 별도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영국과 일본의 경우 공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규정을 보면,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그 범위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수동자산을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은 구비하고 있지 않다.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수동자산 등을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 자산 중 수동자산 역시 가업상속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규정을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2 가업승계 요건의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공제요건의 경우 피상속인 요건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소유요건과 사업참여요건 등을 두고 있다. 상속인 요건으로는 한국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전 요건을 두고 있는 반면, 주요국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가업승계 요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피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과거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평균업력이 10.7년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60% 이상 대표이사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 요건 또한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둘째, 상속인 요건과 관련하여 경영자가 갑작스레 사망하여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 2-3명에게 분할 상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맞춰 상속인 1명에게 가업의 전부를 상속해야 하는 조건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기업 재산을 조기에 이전 받아 승계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5].

3.3 가업상속공제 혜택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혜택은 가업상속시 사업 및 고용의 계속성을 지원하면서 기타 상속의 경우와 과세형평 및 재정 감소 문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율은 40%이나, 독일 85%, 영국 50%, 100%, 일본의 100%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으며, 피상속인의 사업경영기간에 따른 60억, 80억, 100억의 공제한도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엄격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저성장시대에서의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감은 기업경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영속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조세 감면제도 악용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용도 창출하고 제대로 세금을 잘 납부하면서 2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후 후계자에게 승계하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5].

3.4 사후관리요건 정비

기업상속에 대해 상속세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기업의 상속에 한해 세제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사후 관리 기간과 관련하여 10년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다. 그러나 독일 및 일본과 비교하여 경영 노하우, 특화된 전문기술 등에 기반한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보다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자산유지 요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자산이 유지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업자산을 20%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처분사유에 한해서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합리적인 처분사유로 내용연수가 지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상속 공제 취지인 사업의 계속성 달성을 위해 오히려 권장되는 사업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사업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를 6개월 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혜택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재고자산 또는 사업장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족사업지분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후관리 요건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사업용 자산에 재투자한 경우 합리적인 처분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현행 사후 관리 규정에는 없는 요건이나 독일과 일본의 고용유지 요건의 경우 기업상속의 취지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그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사후 관리 기간 동안 각각

급여총액 및 상시 종업원 수를 통해 해당 사업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기업상속공제를 위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유지 측면에서 기업상속공제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고용유지 요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5].

3.5 자본이득세 도입

기업상속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의 해소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자본이득에 대한 이월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본이득과세제도는 상속개시시점에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 시점에서 과세할 수 있는 승계취득 과세방법이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원활한 승계를 위해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상속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억원까지 기업상속공제를 하는 것은 지나친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조차 과세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둘째, 기업상속공제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을 유지할 의무와 함께 그 의무를 지킨 경우에는 유예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업상속에 대해서 정부의 승인을 얻고 일정한 유예기간동안 기업을 충실하게 영위한 경우에는 과세유예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그 대신 기업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실현되었을 때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으로써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6].

4. 결론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전환점에 있어서 기업승계

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경영권의 세습, 혹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과 조세부담 등 과도한 승계비용, 체계적인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7].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의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8].

본 연구의 목적은 가업승상속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상속 및 증여 세제하에서 가업승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규정을 중심으로 가업승계대상기업 입장과 과세당국 입장에서의 세제지원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지향하여야 할 가업승계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 세제지원 혜택시 그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규정을 보면,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그 범위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수동자산을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은 구비하고 있지 않다.

둘째,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가업승계 요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기간이 과거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평균업력이 10.7년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속인 요건과 관련하여 경영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업의 상속에 한해 세제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사후 관리 기간과 관련하여 10년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다. 그러나 독일 및 일본과 비교하여 경영 노하우, 특화된 전문기술 등에 기반한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보다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업상속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의 해소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자본이득에 대한 이월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원활한 승계를 위해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C. J. Shim, The Improvement Plans of Succession in a Family Business for Job Creation Plans, *Kor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Vol. 30, No. 2, pp. 9-29, 2013.
- [2] S. B. Lee, A Study on Inheritance Tax Relief System for Business Succession in Korea, *Ordo Economics Journal*, Vol. 15, No. 4, pp. 47-62, 2012.
- [3] B. H. Cho, Regular Researches : German Inheritance Tax Exemption and Relief System for Family-Owned Business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35, No. 2, pp. 1-17, 2013.
- [4] J. W. Kim, J. I. Cho, O. D. Lee, A study of heavier transfer income tax for a digital econom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8, pp. 53-64 2013.
- [5] B. S. Cho, B. H. Cho, How to Support a Smooth Management Succession of SME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29, No. 4, pp. 66-69, 2007.
- [6] W. I. Kim, An Introduction of Capital Gain Tax System to Support Family Business Succession,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Vol. 11, No. 1, pp. 399-429, 2010.
- [7] M. J. Lee, J. G. Kim,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ucces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9, pp. 56-65 2013.

- [8] K. Y. Kim, G. R.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Activity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5, pp. 267-277. 2013.

이 성 원(Lee, Seong Weon)



- 1999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경영학석사)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신영회계법인 (대표이사)
- 관심분야 : 재무회계, 회계감사 등

· E-Mail : seongwee@hanmail.net